

소수주주 열람권의 한계와 남용방지에 관한 한·중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mits and Prevention of Abuse of Minority Shareholders' Inspection Rights in Korea and China

유소천(刘昭天)(인하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LIU, Zhaotian(Ph.D. Student, Department of Law, Inha University)

목 차

- I. 소수주주 열람권의 제도적 기능과 이론적 기초
- II. 중국 회사법상 소수주주 열람권의 확대와 한계
- III. 소수주주 열람권 남용의 주요 유형
- IV. 한국 상법상 소수주주 열람권 제도의 경험
- V. 중국 소수주주 열람권 제도의 개선 방향
- VI. 결론

I. 소수주주 열람권의 제도적 기능과 이론적 기초

소수주주의 열람권은 회사법이 주주에게 부여하는 공익권적 성격을 가지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 핵심 기능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재무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현대 회사에서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회사의 핵심 정보를 장악하는 반면, 소수주주는 경영 참여의 한계로 인해 정보 접근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열람권 제도는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¹

중국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중소주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기능은 한국 상법상 “소수주주(소수주주권)” 제도와 유사하다. 양 제도 모두 회사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폐쇄회사, 가족회사 및 지분집중도가 높은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실제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열람권 보장이 결여된다면,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 거래, 이익 이전, 이익 은폐 등의 방식으로 중소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²

따라서 열람권은 단순한 정보취득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영감독, 내부자 지배 통제, 투자수익 실현 보장이라는 복합적 기능을 가진다.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열람권 제도는 회사 내부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며, 지배주주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열람권은 단순히 개인 주주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투명성과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의미를 가진다.

1赵旭东：《公司法》，高等教育出版社(2023).

2刘俊海：《现代公司法》，法律出版社(2022).

다만 열람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회사의 재무자료, 고객정보, 거래망 구조, 거래조건 및 핵심 경영전략 등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열람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일부 주주는 이를 이용하여 경쟁정보를 취득하거나 회사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회사법상 중요한 과제는 주주의 감독권과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형성하는 데 있다.³

II. 중국 회사법상 소수주주 열람권의 확대와 한계

중국 회사법은 오랫동안 주주 열람권에 대하여 비교적 제한적인 보호모델을 취하여 왔다. 과거 실무에서는 주주가 회사 정관,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및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회계장부 및 원시증빙자료에 대한 열람은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특히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중소주주의 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 결과 열람권이 실질적인 감독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⁴

2023 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7 조는 주주의 열람권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 조항은 주주가 회사 정관, 주주명부,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 감사회 결의 및 재무회계보고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회계증빙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주주의 열람

3王保树：《中国公司法论》，社会科学文献出版社(2021).

4李建伟：《公司法学》，中国人民大学出版社(2023).

청구에 부정한 목적이 있고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주주의 서면 청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⁵

또한 개정 회사법은 주주가 회계사무소·변호사사무소 등 중개기관에 위임하여 열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열람 과정에서 국가비밀,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열람권 보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회사의 정당한 이익 보호 역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회계증빙자료가 명시적으로 열람 대상에 포함된 점은 중요한 제도적 의미를 가진다. 회계증빙자료는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원시 자료이므로, 장부만 열람할 수 있고 증빙자료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주주는 장부의 진실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 회사법은 열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주주의 재무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열람권 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주주의 감독권과 회사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단순히 “영업비밀”이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주주의 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일부 법원은 회계증빙자료가 회계장부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사가 장기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감독 필요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한 추상적 위험만을 이유로

5「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23 개정) 제 57 조.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감독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일부 사건에서 회사는 회계자료와 거래기록에 고객명단, 거래단가 및 공급업체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열람하게 될 경우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열람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회사는 해당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사의 경쟁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회사가 장기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사회 개최 및 배당 실시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의 정보 접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판례에서는 회사가 소수주주의 열람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회사 내부의 재무자료와 거래정보가 모두 지배주주와 경영진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수주주가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회사 운영의 적법성과 재무상태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일부 판례에서는 주주가 경쟁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 회사와 지속적인 경영분쟁을 겪어 왔으며, 열람 대상 자료가 회사의 핵심 고객정보 및 장기거래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을 더욱 중시하였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원은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자료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현재 중국 사법실무는 소수주주의 감독권 보장과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사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이익형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정한 목적” 판단기준과 열람 범위 제한 기준이 충분히 통일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사건에서도 법원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열람권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상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권 제도는 일정한 참고가치를 가진다. 한국 사법실무는 단순히 열람을 허용하거나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열람 목적의 정당성, 경쟁관계 존재 여부,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회사의 경영상태 및 소수주주의 감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를 제한하거나, 일정 장소에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감독권과 회사의 경영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회사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III. 소수주주 열람권 남용의 주요 유형

열람권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주주는 열람권을 본래의 감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열람권의 남용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일부 주주는 회계장부, 거래기록 및 고객자료 등을 열람함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경쟁활동에 이용한다. 예컨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소량의 지분을 취득한 후 주주 자격으로 회사의 재무자료, 공급망 정보 및

고객자원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열람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⁶

실무상 회사는 고객명단, 거래단가, 공급업체 정보, 원가구조 및 장기거래계약 등이 모두 핵심적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쟁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주주의 열람행위가 단순한 감독 목적이 아니라 경쟁정보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원은 열람 대상 자료의 민감성과 경쟁관계 존재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주주는 반복적인 장부 열람, 자료 복사 요청 및 소송 제기를 통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한다. 폐쇄회사에서는 주주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지배권 분쟁이 발생하면 열람권 소송이 내부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소수주주는 지속적인 장부 열람 요구를 통해 경영진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를 지분매수, 이익교환 또는 경영진 교체를 위한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일부 회사에서는 소수주주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 과정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열람권은 본래의 감독기능을 넘어 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셋째, 일부 주주는 열람권 소송을 악의적 소송수단으로 이용한다. 열람권 사건은 대량의 재무자료와 내부자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는 소송

6牛丹：《股东知情权的边界与滥用防控机制》，载《职工法律天地》第10期(2025).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주주는 열람권 소송 자체를 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⁷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주주가 열람을 통하여 확보한 내부정보를 외부 경쟁기업에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회사와 별도의 경제적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의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열람권 제도는 중요한 감독 기능을 가지지만, 적절한 제한 장치가 결여될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질서를 해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열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현대 회사법상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IV. 한국 상법상 소수주주 열람권 제도의 경험

중국법과 비교할 때, 한국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비교적 성숙한 제도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회사법은 독일법과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으며, 특히 소수주주권 제도를 통하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해 왔다.⁸

한국 「상법」 제 466 조 제 1 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 2 항은 회사가 그

7刘斌：《股东知情权滥用问题研究》，载《法律科学》第3期(2022).

8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2023).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지분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⁹

한국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은 소수주주가 회사 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특히 회사 내부정보가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재무상태, 거래관계 및 경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제도이다.

한국 판례와 사법실무상으로도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은 소수주주의 경영감독을 위한 중요한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열람 목적이 부당하거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주주의 감독권 보호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려는 한국 실무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법 역시 주주의 열람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주주의 열람청구가 영업비밀 취득, 부정경쟁, 악의적 경영방해 또는 회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한국 사법실무는 열람청구의 목적, 주주의 지분비율, 회사의 경영상태, 열람 대상 자료의 민감성,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및 경쟁관계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람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¹⁰

9 「대한민국 상법」 제 466 조.

10 권재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 39 권 제 2 호(2020).

또한 한국 실무는 열람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거나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절차적 제한수단을 활용한다. 예컨대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를 제한하거나, 특정 자료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열람하도록 하거나, 비밀유지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소수주주의 감독권을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영업비밀과 경영자율성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다.

한국의 제도 경험은 소수주주의 열람권 보호가 회사정보의 무제한적 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열람권은 회사 경영에 대한 감시수단으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V. 중국 소수주주 열람권 제도의 개선 방향

중국의 현행 열람권 제도는 2023 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권리의 한계와 남용 방지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첫째,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회사법」 제 57 조는 회사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주주의 열람청구에 부정한 목적이 있고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따라서 향후 사법해석 또는 지도사례를 통해 경쟁관계의 인정 기준, 악의적 열람의 판단요소, 영업비밀의 범위, 권리남용의 구성요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례원칙에 기초한 심사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원은 열람청구 사건을 단순히 인용 또는 기각이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주주의 지분비율, 열람의 필요성, 회사의 경영상태, 자료의 민감성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익형량을 수행하여야 한다.¹¹⁾

특히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제한적 열람을 허용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예컨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을 허용하거나, 복사를 제한하거나, 전문기관 입회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한국법상 절차적 보호수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밀유지명령, 복사 제한, 지정장소 열람, 열람시간 제한, 전문가 입회, 비밀유지약정 체결 등의 방식을 통해 주주의 감독권과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다.

넷째, 열람권 남용에 대한 책임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주주가 열람권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열람권이 회사 감독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 압박이나 경쟁정보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회사법은 열람권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열람권은 중소주주의 감독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질서와 경영자율성을 침해하지

11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2022).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보호와 권리제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VI. 결론

소수주주의 열람권은 현대 기업지배구조 체계에서 핵심적인 제도이다. 이는 주주의 감독권 실현뿐만 아니라 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중국 회사법은 2023 년 개정을 통해 중소주주의 열람권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회계증빙자료를 열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주의 재무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열람권의 확대는 동시에 영업비밀 보호 및 권리남용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 상법은 소수주주권 보호와 권리 제한 측면에서 비교적 성숙한 제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회계장부열람·등사권에 관하여 지분요건, 서면청구, 회사의 부당성 입증책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통해 주주 감독권과 회사 경영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중소주주의 열람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한 목적”의 판단기준 및 영업비밀 보호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법상 이익형량 방식과 절차적 제한수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 회사법은 열람권 확대와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저서>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2.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23.

<논문>

권재열,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한국상사법학회), 제 39 권 제 2 호, 2020.

외국문헌

[중국어]

<저서>

刘俊海: 《现代公司法》, 法律出版社, 2022。

李建伟: 《公司法学》,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23。

王保树: 《中国公司法论》,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21。

赵旭东: 《公司法学》, 高等教育出版社, 2023。

<논문>

刘斌: 《股东知情权滥用问题研究》, 载《法律科学》第 3 期, 2022。

牛丹: 《股东知情权的边界与滥用防控机制》, 载《职工法律天地》第 10 期, 2025。

张民安: 《股东知情权研究》, 载《法学评论》第 4 期, 2021。

초 록

소수주주의 열람권은 현대 기업지배구조 체계에서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주주의 감독권 실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공정성 및 경영효율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지배주주의 지분집중도가 높은 회사 구조에서는 소수주주가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열람권 제도는 소수주주의 투자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2023 년 개정되어 202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주주의 열람권 범위를 확대하여 회계증빙자료를 열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 회사법이 중소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열람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주주가 이를 이용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나아가 부정경쟁행위를 수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주 열람권 보호와 회사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충돌 문제가 중요한 회사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비교적 성숙한 제도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상법」 제 466 조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 소수주주 감독수단 및 권리남용 제한 법리는 회사의 투명성과 경영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하되, 한국 상법상 회계장부열람·등사권 및 관련 사법실무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소수주주 열람권의 한계, 남용 유형 및 방지 장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회사법상 열람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소수주주, 열람권, 회계장부열람·등사권,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한·중 비교

A b s t r a c t

The inspection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is one of the core institutions in modern corporate governance. It is closely related not only to the realization of shareholders' supervisory rights, but also to the transparency, fairness, and managerial efficiency of corporate governance. In companies with highly concentrated ownership, minority shareholders are often structurally disadvantaged because of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Therefore, the inspection right functions as an important legal mechanism for protecting the investment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preventing abuse of controlling power.

The Compan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mended in 2023 and effective from July 1, 2024, expanded the scope of shareholders' inspection rights by including accounting vouchers among the materials subject to inspection. This reflects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mpany law toward stronger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as the scope of inspection rights expands, cases have also increased in which some shareholders use such rights to obtain trade secrets, interfere with normal business operations, or engage in unfair competition. As a result, the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inspectio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corporate trade secret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company law.

By comparison, Korean commercial law has developed a relatively matur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In particular, Article 466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which provides for the right to inspect and copy accounting books, together with related minority shareholder remedies and doctrines limiting abuse of righ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bal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and managerial autonomy. This article focuses on Chinese company law while comparatively examining the Korean system and judicial practice concerning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accounting books. Based on this comparison, it analyzes the limits of minority shareholders' inspection rights, the major types of abuse, and preventive mechanism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inspection right system under Chinese company law.

Keywords: minority shareholders, inspection right, right to inspect and copy accounting books, trade secrets, corporate governance, Korea-China comparison